

개인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


재외동포청

재 외 동 포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

수 신 : 전재외공관장(제외:교황청,아세안,오이시디,유네스코,유엔,제네바)

사 본 : 외교부장관(영사안전정책과장)

발 신 : 재외동포청장(재외동포정책국장)

1. 우리 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. 8. 12. 공포·시행하였습니다.
2. 기존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·이동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,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3. 이번 개정 관련, 민원인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을 변경·이동신고하고자 할 때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, 귀관은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개정 주요내용 >

- o (시행령)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·이동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,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
 - o (시행규칙) ▲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·이동신고 서식 내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, ▲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
4. 아울러, 민원인이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변경·이동신고 시 불필요하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도록 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안 내용을 적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 이동·변경 신고 시 >

기존	개정
신청·신고인 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미포함	⇒ 신청·신고인 제출서류에서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

※ 단,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직접 제출 필요

※ 대리신청의 경우,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
기본증명서 제출 필요

- 붙임 1.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2.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. 끝.

재 외 동 포 청 장

수신자 전재외공관장(제외:교황청,아세안,오이시디,유네스코,유엔,제네바), 외교부장관(영사안전정책과장)

서기관		동포지원제도과		전결 2025. 8. 11.	
김가이		장 휴가		고위외무공무원 이기성	
협조자					
시행 동포지원제도과-6654				접수	
우 22009		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, 34-36층 재외동포청 (송도 동) / http://www.oka.go.kr			
전화번호 032-585-3188		팩스번호 032-585-3188		/ kkasey0728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	